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51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3
2.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경숙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이 결여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 위기청소년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행법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은둔 상태를 벗어나 학교·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 외에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학업수행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담당 부처나 교육기관의 지원조치도 필요한 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위기청소년의 원만한 학교 복귀 또는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학교 또는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u>가정 내</u> <u>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위기청</u> <u>소년 중에서 가정 내</u> ----- ----- ----- -----. 5의2. “ <u>은둔형 외톨이 청소년</u> ”이란 <u>위기청소년 중에서 사회·경제·문화 또는 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u>

6. (생 략) <u><신 설></u>	6.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2(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학교 또는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학교·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	--

최근 고립·은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3년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¹⁾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10대부터 고립·은둔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²⁾

1) <조사 개요>

- (연구기간) '23.5월~'23.11월 / (조사시기) '23.7월~'23.8월(7주)
-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성아 박사(국조실 선행연구 수행))
- (조사대상) 전국 19~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누구나
 - * (조사기간 중 온라인 링크접속 집중 홍보) 언론 보도자료, 온라인 커뮤니티(FM 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지자체 고립·은둔 관련 지원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
- (방식·내용) 온라인 링크(URL, QR 코드)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
 - * 사전 스크리닝 질문 통한 최종 응답완료자 추출: ① 고립도 측정, ②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③ 양상(활동, 식생활, 사회적관계 등) ④ 자가인식, 회복의지 ⑤ 인구사회적 특성 등

2)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 * 승인번호: 제101018호
- (조사주기)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
 - * (홀수해) 기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 (짝수해)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를 13~18세 청소년 인구(약 270만명)에 적용 시 고립·은둔 청소년은 약 14만명 규모로 추정됨.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4년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³⁾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⁴⁾을 추진하고 있음. 고립·은둔 청소년을 전담하여 발견부터 상담, 학습, 치유, 가족관계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사업임⁵⁾.

한편 2024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⁶⁾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76(10점 척도)으로 비해당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7.35점 대비 현저히 낮은 것

○ (2023년도 조사부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조사기간) 2023. 5. 17. ~ 6. 1. (16일)

○ (조사대상) 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0여 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4) 참고자료 참조

5) 2024년에는 총 309명의 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음.

2025년도 사업지역 : <시·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시·군·구>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송파구,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시·성남시, 경북 포항시

6) <조사 개요>

○ 연구기간 : '24.1월~10월 / * 온라인 웹조사 6.11~8.31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대상 : 전국 9~24세 청소년

* (사전조사) 전국 9~24세 청소년, (본조사) 사전 조사 참여자 중, 판별척도를 통해 고립 또는 은둔 청소년으로 판별된 대상자

* 스크리닝: ①외출빈도 및 장애여부에 따라 은둔상태 확인 ②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 관계 등에 대한 문항점수에 따라 고립상태 확인

○ 방식·내용 : 온라인 링크(URL, QR 코드)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

* (조사기간 중 온라인 링크접속 집중 홍보) 언론 보도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고립·은둔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 지자체 고립·은둔 관련 지원기관, 카카오톡(다음) 연계배너 광고 등

으로 나타났으며, 고립·은둔의 이유로는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65.6%로 가장 많았고, 공부/학업 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관련(36.8%) 순으로 응답했음. 71.7%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며, 55.8%가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필요한 도움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79.5%, 경제적 지원 77.7%,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77.4%, 진로 활동 지원 75.1%, 일상생활 회복 지원 70.7%순으로 나타났음.

고립·은둔이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바, 해당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청소년 등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으로 하고, “위기청소년 중에서 사회·경제·문화 또는 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2025년 4월 1일 기준 75개 지자체(광역시 12개, 기초 63개)⁷⁾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조례⁸⁾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한편, 2025. 3. 25.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⁹⁾이 제정되어 2026. 3.26. 시행될 예정인바, 이 법은 가족돌봄 아

7) 경기도, 경기 고양시·광명시·구리시·부천시·안산시·의왕시·이천시·하남시·화성시, 경상남도, 경남 김해시·양산시·진주시, 경상북도, 경북 경산시·안동시·진주시·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동구·북구·서구, 대구광역시, 대구 달서구·달성군·북구·수성구, 대전광역시, 대전 대덕구·서구·유성구·동구·중구,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진구·사상구·서구·수영구, 서울 강북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은평구·중랑구,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인천광역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연수구·중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남 광양시·순천시·장성군·해남군, 전라북도, 전북 김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예산군,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단양군·진천군

8) < 은둔형 외톨이 정의 관련 지자체(광역시) 조례 >

구분	용어의 정의
경기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경상남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경상북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광주광역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부산광역시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울산광역시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인천, 전남, 제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전라북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동·청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기아동·청년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지원대상자의 용어를 “고립·은둔 아동·청년”으로 하고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9)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5. 3. 25., 제정, 2027. 3. 26.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 ~ 라. (생략)

2. **고립·은둔 아동·청년**

가. 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나.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그 밖에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립·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제공·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체계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정의를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학교·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에 “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며,

사회적으로 단절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먼저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내 고립·은둔 청소년과 용어 및 정의 등을 통일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으로 수정하여 정책대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해 지원중인 조기 발견, 방문 상담, 학습(교육) 지원, 자조모임 등

관계 증진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의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학교·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위기청소년의 원만한 학교 복귀 또는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조의2(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학교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제18조의2</u>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생략)	<u>제18조의3</u>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u>제18조의3</u>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생략)	<u>제18조의4</u>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
<u>제18조의4</u>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생략)	<u>제18조의5</u>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현행 제18조의4와 같음)
<u>제18조의5</u>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생략)	<u>제18조의6</u>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현행 제18조의5와 같음)

현재 위기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¹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¹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입학, 재취학 또는 진학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의 지원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위기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복귀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¹²⁾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위기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우관계나 진로문제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문 체계를 고려하여 위기청소년의 학교 복귀·적응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기존 교육 관계 법령을 고려 시, 학교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도록 의무 부과 및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타부처 법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위기청소년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고립·은둔 청소년 등 지원사업 개요〉

(2025.3월말 기준)

구 분	(여가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고립·은둔 청소년 및 가족	고립·은둔 청년 및 가족
지원연령	9~24세, 학령기(9~18세) 중점 지원	19~34세
사업규모	광역 2개(광주, 전남), 기초 10개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송파구,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시·성남시, 경북 포항시) 지역	광역 4개 지역 (인천, 울산, 충북, 전북)
예산액	(’24년) 10억 8900만원 (’25년) 13억 2900만원	(’24년) 13억 900만원 (’25년) 15억 6000만원
추정규모	약 14만명(13~18세) (통계청 사회조사 추정)	약 54만명 (국조실, 통계청 조사 추정)
지원내용	▲ (발굴)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연계, 지역사회 협력망(공간·민간) 활용, 온라인 아웃리치 등을 통해 선제적 발굴 ▲ (방문상담) 청소년, 부모(가족) 등 대상 찾아가는 상담 지원 ▲ (활동지원) 자조모임, 체험활동,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지원 ▲ (학습지원) 학령기 특성을 감안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연계 등 기초학습 지원 ▲ (사후관리) 재고립·재은둔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준비, 자립프로그램 연계 등	▲ (발굴) 온·오프라인 도움창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및 전담발굴팀 운영 ▲ (대상자 선정 및 유형화)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종합평가 및 유형화(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 (프로그램 운영) 고립·은둔 계기, 욕구 등 사정 결과에 기반한 당사자 맞춤형 지원 및 가족 지원 ▲ (사후관리) 서비스 종결 후 정기 면담, 모임 등을 통해 재개입 필요성 판단, 지속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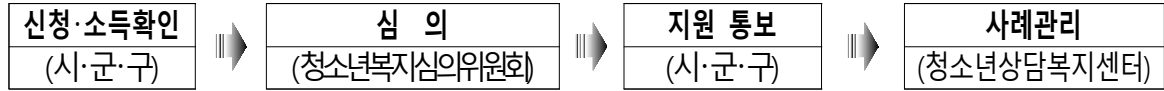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개요〉

□ 추진 개요

-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체계)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1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